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성 매 매 방 지 및 피 해 자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로부터 규제개선, 국민권익침해 방지 등을 위한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기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4 제1호 나목)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다른 공민학교”를 “다른”으로 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자격·학력·학위 취득, 임직원, 공무원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 중 “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공민학교</u>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2. ~ 4. (생략) ② ~ ⑨ (생략)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 ----- ----- ----- ----- ----- ----. 1. ----- <u>따른</u> -----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연 락 처	(02) 2100 - 6435